### 오산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

제정 2015년 2월 23일 예규 제65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야외 운동기구"란 오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.
- 2. "이용자"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하다.
- 3. "관리주체"란 야외 운동기구의 소유자(재산관리관)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오산시에서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한해서 적용한다.

제4조(재정확보) 시장은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설치장소)**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
- 1.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 공장소
- 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- 제6조(설치기준 등) ①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서는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.
  - ②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주로 한다.
  - ③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 제품을 사용하고, 기초와 바닥재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리주체) 야외 운동기구는 다음과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한다.

#### 오산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

- 1. 야외 운동기구를 수시 또는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할 수 있다.
- 2. 관리대장(별지 제1호서식)를 비치하여 야외 운동기구를 점검·관리하여야 하고, 관리 담당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안내문(별지 제2호서식)을 각각의 운동기구마다 부착하여야 한다.
- 제8조(영조물 배상공제 정기등록) 관리주체는 설치 완료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정기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제9조(손해배상)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 즉시 원 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는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## [별지1호 서식]

#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

관리번호								
시 설 명								
시설위치								
소 유 자				관리주	-체			
시설규모	<ul><li>○ 부지면적 :</li><li>○ 시설내역 :</li><li>○ 세부관리번호 : ○○○공원 1</li></ul>							
	조성일	사업비 (천원)	일자		일자		일자	
시설이력			사업내용		사업내용		사업내용	
			사 업 비		사 업 비		사 업 비	
위 치 도					현 황 사 진			

# 세부시설 관리카드

관리번호			관리번호		
시 설 명			시 설 명		
-1 -1	구입가격		현 황	구입가격	
현 황	보수이럭			보수이력	
관리번호			관리번호		
시 설 명			시 설 명		
귀 뒤	구입가격		현 황	구입가격	
현 황	보수이력			보수이력	

## [별지 제2호서식]

# 안 내 문

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				
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				
관리번호				
위 치				
관리부서				
연 락 처				